

建築物의 建築抑制

政府는 73. 7月 12日부터 不要不急한 建築物의 建築抑制를 實施해 오고 있는바, 國家資源의 보다 円滑한 需給을 爲하여 3月 5日부터 同 建築抑制를 다음과 같이 擴大 實施토록 하였다.

対象建築物 및 適用地域

現 行	擴 大	備 考
1. 対象 建築物. 가) 公共建築物 1) 學校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庁舍 2) 政府投資機關 및 銀行의 事務室用 建築物 3) 政府에서 認可한 公益法人의 事務室用 建築物 나) 民間 建築物 1) 各種 興行場 (劇場, 映畫館) (싸, 카바레 料亭) 2) 奢侈性浴場, 集會場, 娛樂場, 展示場, 百貨店, 觀覽施設. 3) 延面積 100坪 以上の 住宅 4) 四層以上の 事務室用 建築物 2. 適用 地域 人口 10萬以上の 都市(22個都市) 다만 特定地區 開發促進에 關한 臨時措置法의 適用을 받는 區域 및 特定街區 整備 地區는 除外함.	가) 1) 左同 2) 左同 3) 左同 나) 1) 左同 2) 左同 3) 延面積 50坪以上の 住宅 (但, 아파 트는 世帶 당 40坪 以上) 4) 左同 全國 다만 特定 地區開發促進에 關한 臨時措置 法의 適用을 받 는 區域 및 特 定街區로 整備地 區는 除外함.	公共機關 및 國營企業體 地方移轉計劃에 依하여 移轉建築하는 建築物과 外國人 또는 外國人 合 作投資業體가 建築하는 建築物은 建築許可抑制 對象에서 除外함.

特定街区 및 各開發区域 決定 現況

억제 대상 건축물 및 적용 지역표

번호	지 구 별	면적()	구 분	결정일
1	동승지구		특정가구	73. 8. 1
2	이화지구(서울문리대 법대)	(46,200)평 154,000M ²	"	"
3	울지로5,6가지구(서울음대)	(21,000) 70,000	"	"
4	용도지구(서울사대)	(32,400) 108,000	"	"
5	반도지구(반도호텔)	(16,800)	"	"
6	금문도지구	57,000	"	73. 9. 6
7	청량지구(중앙공무원교육원)	(27,600) 92,000	"	"
8	연건지구(서울미대)	(12,300) 41,000	"	"
9	도림지구(종합청사후편)	(39,300) 130,000	특정가구 재개발	"
10	적선지구(시민회관후편)	(9,000) 30,000	"	"
11	서린지구(서린동)	(15,600) 52,000	"	"
12	무교지구(무교동)	(14,700) 49,000	"	"
13	다동지구(다동)	(17,700) 59,000	"	"
14	서울역-서대문지구(의주로)	(30,000) 99,957	"	"
15	태평로2가지구(중앙산업 구 대한일보사)	(9,500) 31,400	"	"
16	남대문로3가지구(남대문 시장)	(2,800) 9,400	특정가구 재개발	73. 9. 6
17	남창지구(도큐호텔앞)	(4,500) 14,850	"	"
18	울지로1가지구(반도호텔앞)	(6,600) 21,860	"	"
19	소공지구(서울시청 광장앞)	(4,000) 13,220	"	"
20	장교지구(3.1코가도로양측)	(13,300) 43,900	"	"
21	영동지구	(9,594,000) 31,660,200	"	73. 6. 27
	계	(9,917,300) 32,736,781		

현 행	확 대	비 고
1. 대상 건축물 가) 공공 건축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2) 정부투자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물 3) 정부에서 허가한 공익법인의 사무실 실용 건축물 나) 민간 건축물 1) 각종 흥행장(극 장 영화관 싸 카 바레 요정) 2) 사치성욕탕 집회 장 오락장 전시장 백화점 관람시설 3) 연면적 100명이 상의 주택 4) 4 층이상의 사무 실용 건축물	가) 1) 좌측 2) 좌측 3) 좌측 나) 1) 좌측 2) 좌측 3) 연면적 50 평 이상의 단독주택 (단 아파트는 세대당 40평 이상) 4) 좌측	공공기관 및 국영 기업체지방이전제 획에 의하여 이전 건축하는 건축물 과 외국인 또는 외 국인 합작 투자업 체가 건축하는 건 축물은 건축허가 억제에서 제외함
2. 적용 지역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22개도시 다만 특정 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 및 특정 가 구 정비지구는 제외함)	전국 다만 특 정지구개발촉 진에 관한 임 시조치법의적 용을 받는 구 역 및 특정가 구 정비 지구 는 제외함.	

특정가구 및 각 개발구역내에서의 건축은 억제대상에서 제외 됨